

지급명령신청서

채권자 주식회사 모아공방 (법인등록번호 110111-0000027)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00, 0층

대표자 대표이사 강새론

채무자 주식회사 잇는마켓 (법인등록번호 110111-0000029)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00, 0층

대표자 대표이사 문하람

청 구 취 지

-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,84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다음 각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가. 금 3,840,000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
 -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-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.

독촉절차비용

금 69,380원(내역: 송달료 67,680원, 인지대 1,700원)

청 구 원 인

1. 위탁판매계약과 물품 인도

채권자와 채무자는 2026. 7. 20. 찻잔 선물세트 40세트를 세트당 금 150,000원에 위탁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. 채무자는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판매손익은 채권자의 계산으로 처리하며, 판매액에서 제세금 포함 수수료 20%만 공제하여 2026. 9. 5.까지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. 채권자는 2026. 7. 25. 40세트를 인도하였습니다.

2. 판매 확정과 미판매품 반환

주문원장과 결제내역에 따르면 2026. 8. 1.부터 2026. 8. 20.까지 32세트가 판매되어 금 4,800,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. 배송과 구매확정이 끝났고 취소, 환불, 차지백 및 지급보류는 없습니다. 미판매 8세트는 2026. 8. 25. 전량 반환되어 수량과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.

3. 확정 정산액

채무자는 2026. 9. 1. 최종 정산서에서 판매액 금 4,800,000원과 제세금 포함 수수료 금 960,000원을 확정하였습니다. 다른 공제와 기지급액이 없어 순정산금은 금 3,840,000원입니다.

4. 지급기 경과와 미지급

채무자는 2026. 9. 5.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2026. 9. 7. 독촉 뒤 확정 정산액을 확인하고 2026. 9. 10.까지 지급하겠다고 회신했지만, 2026. 9. 12. 현재 입금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정산금과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위탁판매계약서, 당시 적용 수수료표 및 동의기록 1통
2. 물품목록, 입고확인서 및 초기 재고대장 1통
3. 주문별 원장, 결제수납, 배송완료 및 구매확정 내역 1통
4. 취소·환불·차지백 내역 및 미판매품 반환확인서 1통
5. 최종 확정 정산서, 독촉과 회신 및 입금계좌 거래내역 1통

2026. 9. 12.

채권자 주식회사 모아공방 (서명 또는 날인)

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